

남원의료원 산별현장 임금 합의서

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남원의료원지부는 산별현장교섭에서 고정부채 원금상환액 도비지원금 103억에 대한 청산 또는 차환채 발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임금 요구안을 합의한다.

- 다 음 -

1. 지급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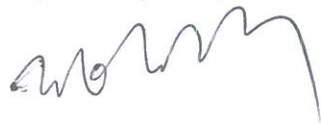
- ① 2010년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남원의료원지부와 합의한 임금 지급률 5%에 대한 적용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기 합의 하였지만, 노·사가 남원의료원 현실을 감안 인상분 5%에 대하여 2010년도 임금인상 적용시기를 2012년 1월 1일로 한다.(전공의 포함)
- ② 단체협약서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.
- ③ 2011년 년차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. (반납은 없는 것으로 한다)
- ④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2008년 미지급분에 대하여 해결한다.

- ⑤ 병원사업장에서 연봉 성과급제 도입은 무리수가 많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.
- ⑥ 고정부채 원금상환액 도비지원금 103억에 대한 청산 또는 차환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2010년도 임금인상 지급률 5%에 대한 적용시기는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⑦ 2011년 노사는 현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.

2011. 12. 23.

전라북도 남원의료원

원 장 정 석 구

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
남원의료원지부장 배 종

